

전기추진설비를 갖춘 선박의 중요보기 구분

■ 주요 개정 사항 요약

관련 규칙	시행 일정
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5편 1장 1절	2026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 되는 선박

■ 주요 개정 사항

○ 개정 사유

1. 전기추진설비를 갖춘 선박(전기추진선박)의 증가에 맞춰 중요보기를 구분

○ 개정 사항

1. 규칙 6편 1장 101. 4항에서 정하는 중요용도를 고려하여, 전기추진선박의 중요보기를 구분
2. 국내법을 바탕으로 전기추진용 전동기와 주발전기용 원동기에 관계한 중요보기를 통칭 하도록 함.

○ 영향 분석

- 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: N/A
- 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: N/A